



제 430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 제정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12호)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및 구성체계	3
가.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6
2. 조문별 검토	9
가. 정의(안 제2조)	9
나.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11
다. 문화관광축제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13
라.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9조 및 제10조) ...	15
마. 글로벌축제 지정 등(안 제11조)	18
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후원, 기부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2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10. 27.

다. 회 부 일: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6년 정부가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약 1,200여 개의 관광형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축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음.

그러나 다수의 축제가 관(官) 주도로 운영되어 지방재정 등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해외 주요 축제들은 민간 후원과 협찬을 기반으로 자율적이고 국제적 기획을 실현해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법적 근거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우리나라 축제의 국제적 성장 잠재력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은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후원 및 협찬의 승인 절차, 회계보고, 감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체계적 후원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기반 위에서 민간의 창의적 참여와 자원 다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도를 체계화하여 축제정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축제산업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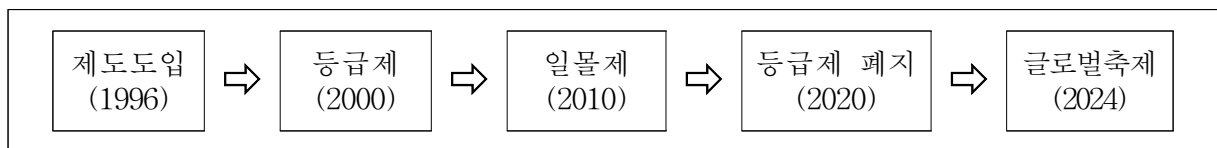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및 구성체계

가.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온 것으로, 2025년 현재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1,209개 중 65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문화관광축제 주요 제도 연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축제는 각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역축제의 70% 이상이 관(官)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재원의 93%가 국비 및 지방비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¹⁾ 공공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라는 의견이 있음.
- 또한, 최근 들어 전국의 축제 예산이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

1)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행사·축제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고, 지역 축제의 상당수가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거나 축제의 본질적 가치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²⁾되고 있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질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과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문화관광축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임.

「관광진흥법」

-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2) “우후죽순 지역축제…예산 1년새 11.5% 더 썼다”, 송종호, 2024.03.18., 서울경제(<https://www.seaily.com/NewsView/2D60OUP22P>)

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동 제정안은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등의 지정과 지원,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축제 정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관광진흥법」에 지역축제,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 전담조직 등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필수적인 법규정이 미비하여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을 통하여 문화관광축제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본칙 5개의 장, 17개의 조문 및 부칙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제정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총칙 규정, ②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관광축제 및 글로벌축제의 지정, 후원, 기부금품 접수 등에 관한 사항, ④ 보칙, ⑤ 별칙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안 제1조)	○문화관광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축제를 세계에 알려 국민과 외국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정의 (안 제2조)	○지역축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특정 집단만 참여하거나 단순 주민 위안 행사는 제외) ○문화관광축제: 문화적·관광적·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 축제 중에서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제 ○글로벌축제: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 축제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구 분	주요내용
국가 등의 책무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름
제2장 문화관광축제의 육성 기반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 위해 노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고시
홍보 등 (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활성화 포럼·세미나 개최 등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안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대학,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지역축제 실태조사 (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통계 작성을 위하여 지역축제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제3장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및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지정취소 (안 제9조 및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관광적·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신청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신청 요청 가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지정 취소
글로벌축제의 지정 (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중 콘텐츠 경쟁력, 글로벌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축제 지정

구 분	주요내용
후원, 기부금품 접수 (안 제12조 및 제13조)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후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후원을 받을 수 있고, 후원 결과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보고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
제4장 보칙	
기부 및 후원 지도·감독 (안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문화관광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및 후원 수취·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시정권고
보고·검사 등,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안 제15조 및 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 등의 조치
제6장 벌칙 (안 제17조)	
부칙 (1년 후 시행 /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2.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를 각각 정의하고,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을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특정 집단만 참여하거나 단순 주민 위안 행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문화관광축제”란 문화적·관광적·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축제 중에서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3. “글로벌축제”란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를 말한다.
4.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란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공공법인

나. 해당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지역축제나 문화관광축제, 글로벌축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고, 축제를 기획·운영 하는 조직 구성에 대한 근거도 없어 관련 제도의 체계가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제정안은 ‘지역축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중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행사와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를 제외하고, 문화적·관광적·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축제를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문화관광축제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글로벌축제’를 지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문화관광축제의 기획·준비·집행·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연 또는 출자한 공공법인이나, 해당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으로 정의함으로써 전담조직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축제’의 정의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에 기반하고 있어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³⁾,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실무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적정하다는 의견임.

3)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축제(祝祭)’를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또는 ‘축하와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음.

나.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자료제출 요청, 계획 통보·고시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제5조(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의 중장기 육성·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축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문화관광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4.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외 축제개최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⁴⁾은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관광특구의 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특구진흥계획⁵⁾은 계획 수립 시 시행령에서 축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⁶⁾ 한 수준에 불과함.

4)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광진흥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 이에, 제정안은 문화관광축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활성화 기반 구축, 실태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 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의 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체계적 지원 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문화관광축제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축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담당자 및 축제기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축제 아카데미 집합교육’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 또는 축제 관련 기관이 축제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축제인력 양성교육 사례]

지자체명	프로그램명	내 용	주 관
전북특별자치도	이벤트 기획자 양성 교육	이벤트의 개념과 기획, 축제 규모에 따른 기획·운영 등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경상북도	축제이벤트 전문인력 양성 교육	축제의 기초, 현장운영 노하우, 기획·운영 실무 등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충청북도 천안시	주민주도형 축제기획자 양성과정	축제 부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천안문화재단
충청남도 당진시	축제전문인력양성사업 ‘당당! 페스타 랩(lab)’	축제 관련 기초, 실무 교육 및 멘토링, 워크숍 등	당진문화재단
전라남도 함평군	축제·관광전문가 양성 교육	이벤트와 축제의 이해, 국내외 축제 현안 분석 등	함평축제관광재단

○ 이와 같이 축제 인력 교육이 교육주관기관 별로 각기 다른 기준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문화관광축제와 글로

7) < 2025 축제 아카데미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 축제 아카데미 집합 교육

○기간 및 예산: 2025. 4월~10월, 7,500만원

○주요내용: 교육 참가자 니즈 및 수요 반영한 주제 선정, 축제 기획 및 운영 등 이론 교육, 축제 관련 최신 트렌드 및 홍보 마케팅 등 교육 지원

별축제 등의 효율적인 기획·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문화관광축제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하도록 함으로써, 축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인력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에 따라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라.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신청, 시·도지사에게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신청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0조는 문화관광축제 지정 취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제9조(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관광적·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
--

축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축제의 특성이 뚜렷하고 콘텐츠가 우수할 것
2. 지역축제의 개최자가 운영능력을 갖출 것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4.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그 밖에 지역축제의 인지도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축제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축제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후원과 제13조에 따른 기부금품이 위법·부당한 모집 및 집행으로 확인된 경우
4.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 등의 사정으로 축제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 현행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⁸⁾, 그 지정 기준과 절

8)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며⁹⁾, 지정 이후 축제의 질 저하나 운영 부실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¹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의9(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①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제정안은 문화적·관광적·경제적 가치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중에서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정한다.

9)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후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문화관광축제 선정

10) 현재는 광역지자체별 성장 잠재력을 가진 축제들을 예비축제로 지정하여 2년간 지원 및 평가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정심사 시 문화관광축제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수립 기간 3년과 일치시킴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정 기준에 우수한 콘텐츠, 운영능력 등과 함께 전담조직의 설치도 포함하여, 상시적인 축제 기획·운영·관리 체계를 갖추어 안정적인 축제 운영의 기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관광축제 지정취소에 있어서도 지정 과정에서 부정이 있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정안을 통하여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관광객 유치 효과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글로벌축제 지정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글로벌축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1조(글로벌축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글로벌축제로 지정할 수 있다.

1. 축제의 콘텐츠 경쟁력이 있을 것
2. 글로벌 인지도가 있고 홍보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
3. 국내외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문화관광축제를 글로벌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글로벌축제의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③ 글로벌축제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글로벌축제는 지난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지침에 따라 시범적으로 지정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문화관광축제 중 글로벌화 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 글로벌 방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
- 2025년 현재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총 3개의 문화관광축제가 글로벌축제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글로벌축제는 2024년 지정되어 각 축제별로 연간 6억 6,000만원~8억원의 예산 및 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2,504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였음.

[글로벌 축제 개요(2024년 기준)]

구분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주요 프로그램	락 페스티벌, 슈퍼루키, 쇼케이스, 클럽파티	주제공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정조대왕 능행차	산천어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세계최대실내얼음, 조각광장 등
개최 횟수	총 19회	총 61회	총 19회

개최 예산(24년)			52억 5,500만원	22억 3,800만원	36억 900만원
직접 경제효과			약 716억 원	약 177억 원	약 1,611억 원
방 문 객	총 방문객	2023년	150,000명	201,011명	1,531,103명
		2024년	150,000명	255,197명	1,869,785명
	외래 관광객	2023년	1,000명	1,760명	85,578명
		2024년	3,105명	8,660명	122,364명
		증가율	(▲ 210.50%)	(▲ 392.05%)	(▲ 42.99%)

- 그런데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글로벌축제에 대한 정의나 지정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축제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콘텐츠 경쟁력, 글로벌 인지도, 홍보역량,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글로벌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축제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후원, 기부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안 제12조는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 후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민간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는 기부금품 및 후원의 수취, 관리·운영 기부 및 후원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2조(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후원 등) ①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해당 문화관광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후원(문화관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금전,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명칭의 표시, 홍보, 인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후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후원을 받을 수 있다.

1. 후원의 금액과 물품의 종류 및 규모
2. 후원의 대상 범위와 자격
3. 자금 및 물품의 집행·관리 방법
4. 사용내역과 잔여분의 처리
5. 후원자에 대한 인정 또는 급부의 범위와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후원계획에 따라 후원받은 결과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원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문화관광축제의 전담조직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 및 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문화관광축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1. 기부금품 및 후원의 수취

2. 기부금품 및 후원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기부금품 및 후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따라야 한다

○ 현재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약 1,200여건인데 이 축제 개최에 소요되는 재원의 93%가 국비 및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임.

○ 이는, ① 지역축제 또는 문화관광축제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입장권 판매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후원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기부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축제의 후원을 받는 과정에 제약이 있으며, ③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발적 기탁¹¹⁾ 또한 그 절차와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축제의 금품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수령이 곤란하여 사실상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민간 재원의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호주 비비드 시드니 페스티벌, 일본 삿포로 눈 축제 등 해외 주요 축제들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후원 등 민간 후원비율이 40% 이상으로, 다양한 민간 후원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확보¹²⁾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축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후원, 민간자본 투자, 기부 등에 적용되는 법적·제도적 제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외 글로벌축제 후원 사례]

글로벌 축제 명	축제핵심 콘텐츠	기업 후원
일본 삿포로 눈 축제	-축제 개최기간: 약 10일 -개최장소: 오도리 공원 일대 -핵심프로그램 : 눈 조각, 얼음 조각 전시, 어린이 썰매, 대형 미끄럼틀	항공사(ANA/JAL), 코카콜라 등 기업의 지속적 후원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축제 개최기간: 약 30일 -개최장소 : 에딘버러 일대(300곳의 공연장) -핵심프로그램 : 2,000여개의 공연프로그램	조니워커, 틱톡 등의 글로벌 기업의 후원
호주 비비드 시드니 페스티벌	-축제 개최기간: 약 20일 -개최장소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달링하버 등	- 삼성, 기아자동차 등 한국 재계 중심의 메인 후원 - 메인, 커뮤니티, 공식, 자선, 지원, 프로그램, 지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축제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2023년, 169쪽

	-핵심프로그램 : 비비드 라이트, 비비드 뮤직, 비비드 키친, 비비드 라이트 워크	역, 협력 파트너 등 총 8 개 분야 후원 구성
--	---	-------------------------------

○ 이에, 제정안은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 후원금·물품의 규모, 집행·관리, 후원자 인정 방식 등을 포함한 후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받은 결과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를 의무화하여,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후원의 제도적 기반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또한,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재원의 기부 활성화와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¹³⁾의 심의를 거치면

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를 접수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안 제13조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 후원, 기부 등은 관(官) 주도의 문화관광축제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해외 축제와 같이 우리나라 축제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재원의 투명한 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 재원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문화제, 축제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06년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시·군·구로 기부심사위원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회를 확대 설치한 바 있다는 점과 ② 최근에도 지역축제 후원
금에 대한 국회 지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출자·출연
법인·단체의 기부금품의 접수는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 지정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문화관광축제 (25개)	명예 문화관광축제 (20개)	예비축제 (20개)
서울			관악강감찬축제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대구	대구치맥페스티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인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글로벌축제} 부평풍물대축제		소래포구축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김치축제
대전			대진효문화뿌리축제
울산	울산용기축제		태화강마두회축제
세종			세종축제
경기	수원화성문화제 ^{글로벌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연천구석기축제, 화성뱃놀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강원	강릉커피축제, 정선아리랑제, 평창송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글로벌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마임축제	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
충북	음성품바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괴산고추축제
충남	한산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천안홍타령축제, 금산인삼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논산딸기축제
전북	순창장류축제,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전남	보성다향대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목포항구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함평나비축제, 담양대나무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경북	포항국제불빛축제, 고령대가야축제	안동탈춤축제, 문경차사발축제, 영주풍기인삼축제	청송사과축제
경남	밀양아리랑대축제	진주유등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제주			탐라문화제

*명예관광축제: 누적 재정지원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지원 일몰된 축제들을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홍보마케팅 등 후속 지원

*예비축제: 광역지자체별 성장 잠재력을 가진 축제들을 예비축제로 지정하여 2년간 지원 및 평가, '26~'27 문화관광축제 지정심사 시 문화관광축제 진입 여부 결정